



KOLAS-SR-016 : 202X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1. 서론

1.1 이 문서는 ISO/IEC 17065를 기준으로 FoodPlus GmbH가 운영하는 「GLOBALG.A.P. IFA(농장종합보증, Integrated Farm Assurance)」 인증 스킴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는 제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추가적인 기술요건이다.

1.2 이 문서는 KS Q ISO/IEC 17065, 한국인정기구(영문명칭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이며, 약어로 “KOLAS”라 한다. 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의 운영요령 및 GLOBALG.A.P.의 일반 규정(General Regulations)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2. 인용문서

2.1 KS Q ISO/IEC 17065:2014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2.2 KOLAS-R-002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2.3 KOLAS-R-003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2.4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

2.5 GLOBALG.A.P. Supporting Document (Scopes of ISO/IEC 17065 Accreditation for GLOBALG.A.P. Standards)

3. 용어 정의

- 3.1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 또는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다만, 이 문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표준화 및 관련활동-일반어휘(KS A ISO/IEC Guide 2), 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어휘(KS Q ISO/IEC 17000),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의 용어정의를 적용된다.
- 3.2 “신청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평가를 받기 위해 인정신청을 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이 요령에서 사용될 때마다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관 모두에 해당된다.
- 3.3 “FOODPLUS GmbH”라 함은 GLOBALG.A.P. IFA 인증스킴의 문서에 대한 법적 소유자로서 GLOBALG.A.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3.4 “생산자(Producer)”라 함은 GLOBALG.A.P. IFA 인증스킴의 생산과정 및 인증범위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5 “생산지(Production site)”라 함은 동일한 투입물(용수, 작업자, 도구, 등)이 사용되며, 단일 법인이 임대 또는 소유하면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생산지역을 의미한다.
- 3.6 “생산자 단체(Producer Group)”이라 함은 GLOBALG.A.P. IFA 인증스킴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의 단체로 GLOBALG.A.P. IFA Regulations에 따라 등록된 인원 100%의 내부관리 및 내부절차가 수행되고 있고 인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 책임자를 보유한 단체를 의미한다.

- 3.7 “무결성 프로그램(Integrity Program)”이라 함은 GLOBALG.A.P. 사무국에서 직접 GLOBALG.A.P. 인증기관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실 평가, 현장입회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 3.8 "IFA V6 GFS"라 함은 GFSI(국제식품안전협회,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s) 인정(recognition)이 필요한 생산자를 위해 GFSI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된 IFA V6 버전을 의미한다. 과채류와 수산양식물만 적용된다.
- 3.9 “IFA V6 SMART”라 함은 GFSI 인정(recognition)이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은 생산자를 위한 IFA V6 버전을 의미한다.
- 3.10 "Certification Body Administration Tool(CB-AT)"라 함은 심사원 자격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도구를 말한다. GLOBALG.A.P. 위원회가 심사원 자격을 적절히 승인할 수 있도록, GLOBALG.A.P. 인증기관은 모든 심사원 및 각 심사원의 자격을 CB-AT에 등록해야 한다.
- 3.11 “Audit Online Hub(AOH)” GLOBALG.A.P. 인증기관이 심사 정보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IT 도구를 말한다. IFA V6(은)는 AOH 사용이 의무이다. 인증기관은 GLOBALG.A.P. 인증서 생성 전, AOH를 통해 심사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3.12 “Validation Service”라 함은 GLOBALG.A.P. 인증서를 발행하고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IT 도구를 말한다. IFA V6(은)는 GLOBALG.A.P. 데이터베이스(database) 대신, 유효성 서비스(Validation Service)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4. 인정 범위 - GLOBALG.A.P. IFA

4.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인정범위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1>의 인정분야에 추가적으로 4.2항의 GLOBALG.A.P. IFA 범위 및 4.3항의 옵션 범위를 적용한다.

4.2 GLOBALG.A.P. IFA 범위

인정범위		
범위(Scope)		제품군(Product Categories)
작물 (Plants)	스마트 (Smart)	·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 화훼류(Flowers and Ornamentals) · 홉(Hops)
	국제식품안전 (GFS)	·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수산 양식물 (Aquaculture)	스마트 (Smart), 국제식품안전 (GFS)	· 어류(Finfish) · 갑각류(Crustaceans) · 연체류(Molluscs) · 해조류(Seaweed)

4.3 옵션 범위

4.3.1 옵션 1

(1) 개별생산자 인증

: 신청하는 단일생산지를 경작하는 생산자

(2)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미적용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

: 복수생산지를 가진 개별 생산자 혹은 하나의 조직으로 QMS
를 적용하지 않는 생산자

(3)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

: 복수생산지를 가진 개별 생산자 혹은 하나의 조직으로 QMS를
적용하는 생산자

4.3.2 옵션 2

(1) QMS를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5. 인정기구 운영사항

5.1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범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신청확인서를 신청기관에 발행하여야 한다.

5.2 인정기구는 GLOBALG.A.P. IFA 범위(농산물, 수산 양식물)에 대한 최초 평가 시, 신청기관이 신청한 각 범위에 대해 최소 1번의 현장 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3 인정기구는 신청기관의 신청범위에 관계없이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입회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만 옵션 2(옵션 1 QMS 적용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 포함)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 예시: 신청기관이 QMS 적용 수산 양식물(AQ)과 과채류(FV)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인정기구는 과채류 QMS 심사에 대해서만 입회평가를 실시한 후, 두 개 범위에 대해 옵션 2 및 QMS 적용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을 인정을 할 수 있다.

5.4 인증기관이 인정받은 범위의 제품군 대해 확대 신청을 한 경우, 인정기구는 별도의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확대 범위와 관련된 인원 역량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여야 한다.

5.5 인정기구는 최대 4년 주기로 인증기관의 모든 범위에 대한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입회평가는 QMS를 고려해야 하며, QMS를 적용한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법인 생산자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입회평가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 인정기구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6 인정기구는 GLOBALG.A.P. Extranet을 통해 인정기구와 관련된 불만 관리시스템 및 인증기관에 대한 무결성 프로그램 기록을 매년 검토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인증기관의 차기 인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는 GLOBALG.A.P.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무결성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GLOBALG.A.P. 사무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7 인정기구는 GLOBALG.A.P.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 인정평가 보고서와 가장 최근의 인정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5.8 인정서

5.8.1 인정기구의 장이 인증기관에 발행하는 인정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1) 인정분야 및 범위 (범위 및 제품군 포함)
- (2) GLOBALG.A.P. IFA 일반규정 및 P&Cs (버전포함)
- (3) 해당되는 경우, 인증지역범위 및/또는 옵션에 대한 제한사항

5.8.2 인정서의 인정분야 및 범위 양식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의 별지 제9호 서식을 따른다. 이때, 인정분야 및 범위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1> 및 본 문서의 5.2항(범위, 제품군)을 적용한다.

6. 인정기준

- 6.1 GLOBALG.A.P. IFA 인증스킴을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인정에 대한 기준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인증기관규칙) 5항부터 9항까지 및 11항부터 14항까지에 명시된 다음의 인증기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GLOBALG.A.P. IFA V6 인증기관 규칙

5. 운영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s)

- 5.1 일반요구사항
- 5.2 인증기관 직원의 교육 및 자격
- 5.3 GLOBALG.A.P.과의 인증 및 준수 정보 교환
- 5.4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기밀유지, 무결성

6. 생산자 등록(Producer Registration)

- 6.1 일반요구사항
- 6.2 생산자 등록

7. 심사 프로세스(Audit Process)

- 7.1 심사 범위(Audit scope)
- 7.2 QMS 미적용 옵션 1 개별생산자
- 7.3 QMS 적용 옵션 1 개별생산자 및 옵션 2 생산자 단체
- 7.4 불고지심사(Unannounced CB Audit)
- 7.5 동등성 스킴 심사/체크리스트(CB Audits for benchmarked schemes/checklists)
- 7.6 인증기관 서류심사(옵션 1 또는 옵션 2)를 위한 ICT 활용
(IAF MD4:2018 기반)
- 7.7 GLOBALG.A.P. 원격심사 (IFA V6 GFS, HPSS 및 PHA는 해당없음)

8. 인증 프로세스(Certification Process)

- 8.1 일반요구사항
- 8.2 생산자 부적격 및 제재(Producer Non-conformance and Sanctions)

8.3 인증서 요구사항(Paper Certificate Requirements)

8.4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Certificate validity extension)

9. 인증업체의 인증기관 이동(Transfer Between CBs)

9.1 일반요구사항

9.2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후, 인증기관 이동(Transfer during certificate validity extension)

11. 인증무결성 프로그램(Certification Integrity Program)

11.1 심사결과의 평가 및 분류

12. GLOBALG.A.P. 인증기관 농장심사원 자격

13. GLOBALG.A.P. 인증기관 QMS 심사원 자격

14. IFA V6 GFS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14.1 추가 요구사항

14.2 대체 요구사항

7. 인정신청

7.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신청기관의 인정신청절차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7.1.1 ISO/IEC 17065에 따라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않거나 중도 해지한 신청기관은 GLOBALG.A.P. 옵션 1에 대해서만 인정신청 할 수 있으며, ISO/IEC 17065에 따른 공인제품인증기관 유지 기관이 GLOBALG.A.P.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를 신청한 경우, GLOBALG.A.P. 옵션 2 범위까지 신청할 수 있다.

7.1.2 신청기관은 GLOBALG.A.P.의 IFA 인증기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한 모든 문서와 기록물(GLOBALG.A.P. Extranet의 인증기관 정보 포함)에 대해 KOLAS 사무국이 검토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7.1.3 인정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신청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7.1.4 인정기관의 인정과 연계된 GLOBALG.A.P. 인증기관 승인 단계에 대한 절차는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 4항(인증기관 승인 절차)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7.1.5 GLOBALG.A.P. IFA의 개정(예 : V6.1에서 V6.2, V6에서 V7)된 기준 문서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KOLAS-R-002의 제12조(인정 분야 변경 등)에 따르며, 개정된 기준문서가 인증기관 품질시스템에 적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개정 문서 적용에 따른 기관 갭 분석(gap analysis) 기록
- (2) 개정문서에 대한 직원(인증심사원 등) 교육·훈련 기록
- (3)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4) 내부심사 실적
- (5) 기타 필요한 사항

8. 평가반 구성

8.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평가사 선정 및 구성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OLAS-R-003)”에 따른다.

9. 평가일수의 산정

9.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인원 및 일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에 따르며, 현장평가일수는 KOLAS-R-003의 제10조(현장평가일수)에 추가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다.

9.1.1 QMS 적용(옵션 1 또는 옵션 2) 범위에 대한 입회평가

- (1) QMS 심사
- (2) 샘플생산자 심사
- (3) 생산자 보고서 작성
- (4) 이동시간

9.1.2 옵션 1 생산자 범위(QMS 미적용) 입회평가

- (1) 생산자 심사
- (2) 보고서 작성
- (3) 이동시간

10. 인증기관의 인증표본 및 소재지 표본 추출

10.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신청기관의 인증표본 및 소재지 표본 추출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에 따른다.

11. 평가업무절차

- 11.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평가업무절차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11.2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사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의 별지 제6호 서식과 본 추가기술요건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야 한다.
- 11.3 인정기구는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GLOBALG.A.P. Extranet의 인증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1.4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사는 해당되는 경우, GLOBALG.A.P.의 인증무결성 프로그램의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한다.
- 11.5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사는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GLOBAL G.A.P. IFA General Regulation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범위에 해당하는 GLOBALG.A.P. P&C(Principles and Criteria)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 평가보고서

- 12.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절차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에 따른다.

13.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평가

13.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평가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OLAS-R-003)”에 따른다.

1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0320호, 2022.10.31..)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고시에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신청 확인서

(CONFIRMATION OF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기관명 :

(Name of Applicant (Certification Body))

법인등록번호 :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법인주소 :

(Address of Corporation)

사업장 소재지 :

(Address of Certification Office)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

(Application Scope of Accreditation)

(예시) GLOBALG.A.P. Integrated Farm Assurance

v6 Smart (Option 1, 2) / Fruit and Vegetable

(예시) GLOBALG.A.P. Integrated Farm Assuranc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Fruit and Vegetable V

xx(20xx.xx)

기준문서 :

(Normative Documents)

상기 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65에 의거하여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confirms the applicant has applied for KOLAS accredited product certification body under Conformity Assessment Management Act. Article 8 and KS Q ISO/IEC 17065.)

년 월 일

한국인정기구장

[별지 제2호 서식]

GLOBALG.A.P. IFA 추가기술요건 평가 점검표

기관명 :

평가구분 및 평가일자 : 신규/확대/변경/정기검사 (00.00.00~00.00.00)

평가항목		평가결과		
KS Q ISO/IEC 17065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2 공평성 관리 4.5 기밀유지	5.4 인증기관 독립성, 공평성, 기밀유지, 무결성 o 인증기관의 운영 및 인증활동의 독립성 및 공평성 절차 운영 o 기밀유지에 관한 절차 운영 o 심사원이 연속으로 4년을 초과하여 한 업체를 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운영			
6.1 인증기관 인원	5.2 a) 스킵관리자 o 정규직, 농장심사원 자격			
	5.2 b) 내부강사 o 정규직, 농장심사원 자격, 내부강사 시험합격			
6.2 평가를 위한 자원	IFA SMART (*별표 1 참조) 12. 농장심사원 o 학력 및 경력 - 관련분야 학력, 경력 o 필수교육 - 1일 심사원 교육 - 식품안전 8시간 - 위생교육 8시간 - GLOBALG.A.P. P&C 온라인교육 - 농약, 토양관리, 비료 및 IPM 교육 o 인증기관의 심사원 후보자에 대한 업무 수행도 평가 - 최소 1회 참관 - 최소 1회 입회평가 o 심사원 역량 유지 - 최대 4년 1회 입회평가 - 연간 최소 5건 농장 심사			
	13. QMS 심사원 o 학력 및 경력 - 관련분야 학력, 경력 - 최소 10일 QMS 심사경력 o 필수교육 - 최소37시간 ISO선임심사원 시험합격 - 1일 심사원 교육 - 식품안전 8시간 - 위생교육 8시간 - GLOBALG.A.P. P&C 및 QMS 온라인교육 - 농약, 토양관리, 비료 및 IPM 교육 o 인증기관의 심사원 후보자에 대한 업무 수행도 평가 - 최소 1회 참관			

		- 최소 1회 QMS 입회평가 - o 심사원 역량 유지 - 최대 4년 1회 입회평가 - 연간 최소 5건 QMS 심사			
	IFA GFS (*별표 1 참조)	12. 농장심사원 o IFA V6 SMART 자격요구사항 적용 o 최소 3건의 농장심사기술평가 실시 / 1건은 입회평가 대체가능			
		13. QMS 심사원 o IFA V6 SMART 자격요구사항 적용 o 최소 3건의 QMS 심사기술평가 실시 / 1건은 입회평가 대체가능			
7.2 신청 7.3 신청검토	IFA SMART/ GFS	6. 생산자 등록 o 신청 생산자의 정보에 대한 GLOBALG.A.P. 데이터베이스 등록, 업데이트, 수수료 공지 등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o 인증신청서에는 'GLOBALG.A.P. Registration Data Requirements'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영 적절성			
7.4 평가	IFA SMART	7. 심사프로세스 7.2 QMS 미적용 옵션 1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individual producer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7.3 QMS 적용 옵션 1 / 옵션 2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IFA GFS	IFA V6 SMART 절차 및 '14. IFA V6 GFS 추가요구사항'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IFA SMART/ GFS	7.6 인증기관 서류심사(옵션 1 또는 옵션 2)를 위한 ICT 활용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해당시)			
	IFA SMART	7.7 원격심사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해당시)			
7.5 검토 7.6 인증 의사결정	IFA SMART/ GFS	8. 인증프로세스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o 인증결정위원회의 자격 충족여부 - 옵션 1 : 최소 농장심사원 자격 + 13.3.1의 a)의 QMS 심사원 자격 - 옵션 2 : 최소 QMS 심사원 자격 o 인증신청서 등 인증 관련 서류 확인 o 심사체크리스트 작성여부 o 필수 100%, 준필수 95% 이상 충족 o 부적합 시정조치 완료 여부			
7.7 인증문서	IFA SMART/ GFS	5.3 인증 및 준수 정보 교환 o GLOBALGLA.P. IT 시스템을 통한 인증 정보 관리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8.3 인증서 요구사항 o 최신 인증서 양식 사용여부 o 인증과 관련된 생산자, 생산지 및 취급 시설 정보 제공여부 o GLOBALG.A.P. IT 시스템 활용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7.9 사후관리	IFA SMART	7. 심사프로세스 7.3 QMS 적용 옵션 1 / 옵션 2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7.4 불고지심사에 대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IFA GFS	IFA V6 SMART 절차 및 '14. IFA V6 GFS 추가요구사항'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7.10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IFA SMART/GFS	8.4 인증기간연장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o 추가심사 후, 품목/인원/면적 추가			
	IFA SMART	7. 심사프로세스 7.2 QMS 미적용 옵션 1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individual producer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7.3 QMS 적용 옵션 1 및 옵션 2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를 적용한 절차 보유			
		9.2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후, 인증기관 이동 관련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IFA GFS	IFA V6 SMART 절차 및 '14. IFA V6 GFS 추가요구사항'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o 추가심사 없는 인원/면적 추가(옵션 2)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의 4.9항 관련 절차 보유			
7.11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7.2 QMS 미적용 옵션 1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Rules for individual producer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7.3 QMS 적용 옵션 1 / 옵션 2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8.2 생산자 부적격 및 제재 o 부적합사항에 대한 제재(경고/정지/취소) 및 시정조치 평가에 따른 해제			
8.7 시정조치		11. 인증무결성프로그램 (CIPRO) 평가에서 확인된 인증기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 별도 구분이 없는 경우, SMART 및 GFS에 해당된다.

[별표 1]

GLOBALG.A.P. IFA SMART/GFS 농장심사원(Farm Auditor)/QMS 심사원(QMS Auditor) 자격요건

GLOBALG.A.P. 인증심사원은 IFA V6 SMART/GFS 각 스킴별 농장심사원(Farm Auditor) 및 QMS 심사원(QMS Auditor)로 구분되며, 각각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5] 인증기관 직원의 자격기준에 추가적으로 IFA V6 SMART의 경우,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 12, 13항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하며, IFA V6 GFS의 경우, 추가로 동 규칙 12~14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IFA V6 SMART/GFS 공통

가. 농장심사원(Farm Auditor)/ QMS 심사원(QMS Auditor)의 업무범위

- 1) 농장심사원은 옵션 1 생산자의 GLOBALG.A.P. P&C 준수여부를 심사하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는 제외한다.
- 2) QMS 심사원은 옵션 1 생산자 및 옵션 2 생산자 단체의 GLOBALG.A.P. P&C 준수에 대한 심사와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한다.

나. 학력 및 경력

농장심사원 및 QMS 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은 다음의 1), 2)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1) 해당되는 인증범위(농작물 및/또는 수산 양식물)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최소 2년 과정의 동등 수준의 교육) 및 전문학사 졸업 후, 최소 2년 경력을 포함한 최소 3년의 농업분야 경력 보유
- 2) 식품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최소 2년 과정의 동등 수준의 교육) 및 해당되는 인증범위(농작물/수산 양식물)의 농장 및 현장 실무직 또는 기술분야 생산관리직으로 최소 4년의 경력 보유
- 3) 정규과정을 통한 전공 입증(예 : 학위수여증 등)이 아니더라도, 인증범위 관련 교육 이수 입증을 통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기술 및 자격

농장심사원/심사원은 기술적 능력 및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

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심사 경력

- 농장심사원/QMS 심사원은 농장심사의 1일 검사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QMS 심사원은 ISO 19011에 기반한 경영시스템 관련 선임심사원 교육을 이수(최소 37시간 이상)하고, 경영시스템(예, ISO 9000, ISO 14000, ISO 22000, OSHAS 18000, ISO/IEC 45001, BRCGS Food, IFS Food, 기존 GLOBALG.A.P. 옵션2 심사 또는 옵션 4 표준, 유기농 생산자단체 심사 등)에 대한 최소 10일의 심사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QMS 심사원은 'GLOBALG.A.P. QMS 심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식품안전, G.A.P. 교육 이수

가) HACCP 관련 정규 교육과정

- 농장심사원/QMS 심사원 자격 부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 인증기관에 의한 내부교육 인정가능

나) 식품위생 관련 정규 교육과정

- 농장심사원/QMS 심사원 자격 부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 * 화훼 및/또는 작물 번식재 분야의 농장심사원 및 심사원은 해당되지 않음

다) GLOBALG.A.P. P&C 온라인 교육

- GLOBALG.A.P. 온라인 교육 이수 및 합격

라) 작물보호, 토양관리, 비료 및 IPM 교육이수

- 작물 범위 농장심사원/ QMS 심사원 대상
- 자격의 일부이거나 정규교육 이수

3) 의사소통능력

-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및 전문용어 활용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 대한 예외는 GLOBALG.A.P. 사무국과 협의 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증기관의 농장심사원/QMS 심사원에 대한 작업수행도 평가

- 인증기관은 농장심사원 후보자 자격부여 전, 관련 분야에 대해 자격을 부여받은 농장심사원 및 QMS 심사원이 실시하는 옵션 1 심사 또

는 옵션 2 생산자 단체에 대해 농장심사원 후보자가 최소 1회 이상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QMS 심사원 후보자에 대해 자격부여 전 최소 1회 이상 QMS 적용 옵션 1 또는 옵션 2의 입회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농장심사 또는 QMS 심사자는 농장심사의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QMS 심사는 QMS 심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5) 농장심사원/QMS 심사원의 자격 유지

- 인증기관은 농장심사원/QMS 심사원이 매년 최소 5회 심사(농장심사원 : 농장, QMS 심사원 : QMS 및 농장)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인증업체 수가 충분하지 않아 본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GLOBALG.A.P. 사무국과 협의 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증기관은 농장심사원/QMS 심사원에 대해 최대 4년에 1회씩 역량 점검을 위한 입회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농장심사원/QMS 심사원 순환

- 인증기관은 농장심사원/QMS 심사원이 4년 연속으로 한 업체를 검사/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다만, 인증기관이 해당 국가/권역에서 농장심사원/QMS 심사원 1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예외기간은 12개월로 한다.

2. IFA V6 GF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의 14항 관련

가. 농장심사원(Farm Auditor)

- 인증기관은 농장심사원 자격 승인 전, 해당 심사원 후보자에 대한 최소 3건의 농장심사기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심사기술평가는 최소 1건의 농장심사 입회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2건의 평가는 추가 입회평가 또는 서류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나. QMS 심사원(QMS Auditor)

- 인증기관은 QMS 심사원 자격 승인 전, 해당 심사원 후보자에 대해 최소 3건의 QMS 심사기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심사기술평가는 최소

1건의 QMS 심사 입회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2건의 평가는 추가 입회평가 또는 서류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 농장심사원/ QMS 심사원 자격 유지

- 농장심사원의 자격유지를 위해, 인증기관은 농장심사원이 매년 최소 5건의 농장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중, 최소 1건은 GFSI 인정 GLOBALG.A.P.에 대한 심사이어야 한다.

- QMS 심사원의 자격유지를 위해, 인증기관은 QMS 심사원이 매년 최소 5건의 QMS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중, 최소 1건은 GFSI 인정 GLOBALG.A.P.에 대한 심사이어야 한다.